

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

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산업대학원 종합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 시 열감지 및 문진표 작성을 실시합니다.
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, 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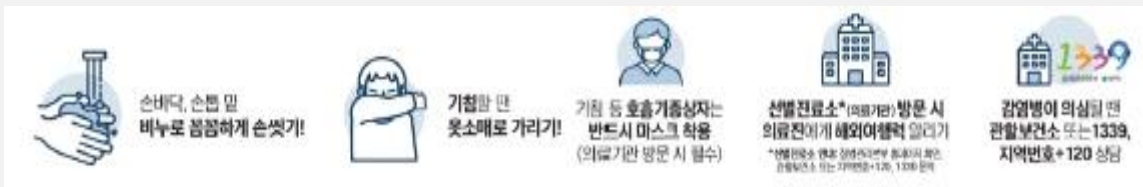
1. 응시자 협조 사항

-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**마스크를 착용** 후 입실 및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.
- 단,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 바랍니다.
- 모든 응시자는 시험실 **입실 전 체온 측정**에 협조바랍니다.
- 체온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.
-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되며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을 이용하여 시험을 치르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됩니다.
- 해당 시험실 입구에 비치된 **손소독제**로 손 위생 후 시험실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.
-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, 손수건,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-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(발열, 기침, 인후통, 호흡곤란 등)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.
-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**건강거리두기**를 실천하여 주십시오.
- 시험 후 시험 시행일로부터 **14일간 증상 모니터링**이 필요하며 코로나19 주요증상이 있을 경우 산업대학원 종합시험 담당자(031-330-6852) 및 콜센터(1339, 지역번호+120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2. 시험장 출입 금지 및 응시제한 안내

-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환자,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(유증상자)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(또는 자가격리통지서)를 받아 격리중인 자

3.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준수



2021-1 산업대학원 종합시험 응시자 전자문진 및 출입 등록

[스마트폰 카메라 또는 QR스캔 어플 사용]



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 후 아래 화면이 뜨면 클릭하세요!



웹페이지



브라우저에서 www.mjuqr.kr 에
접속하려면 **여기**를 누르세요



꼭! 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** **기억해야 할 행동수칙**

국민 예방수칙



흐르는 물에 비누로
꼼꼼하게 손씻기



기침이나 재채기할 때
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


씻지 않은 손으로
눈·코·입 만지지 않기

특히 임신부, 65세 이상,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



발열, 호흡기 증상자와의
접촉 피하기



의료기관 방문 시
마스크 착용하기



사람 많은 곳
방문 자제하기

유증상자* 예방수칙

* 발열, 호흡기 증상(기침, 목아픔 등) 이 나타난 사람



통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
외출 자제하기



3~4일 경과를 관찰하며
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



38℃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
콜센터(☎1339, 지역번호+120),
관할보건소 문의 및
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



의료기관 방문 시
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



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
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



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
외출,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
격리자는 의료인, 방역당국의
지시 철저히 따르기



**비누로 꼼꼼하게
30초 이상**

[올바른 손씻기 6단계]



**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
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**



**기침할 때 옷소매로
입과 코를 가리고!**

[올바른 기침예절]



발행일 2019.11.5.

※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 7-4판 기준

□ 사례 정의

○ 확진환자(Confirmed case)

-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

※ 진단검사 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전자(PCR) 검사, 바이러스 분리

○ 의사환자(Suspected case)

-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(37.5°C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자

○ 조사대상 유증상자

-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
-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(37.5°C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자
-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, 14일 이내에 발열(37.5°C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자

□ 감염병의심자

- 감염병환자,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(이하 “감염병환자등”)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
-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
-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

* 관련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 (2020.3.4. 시행)